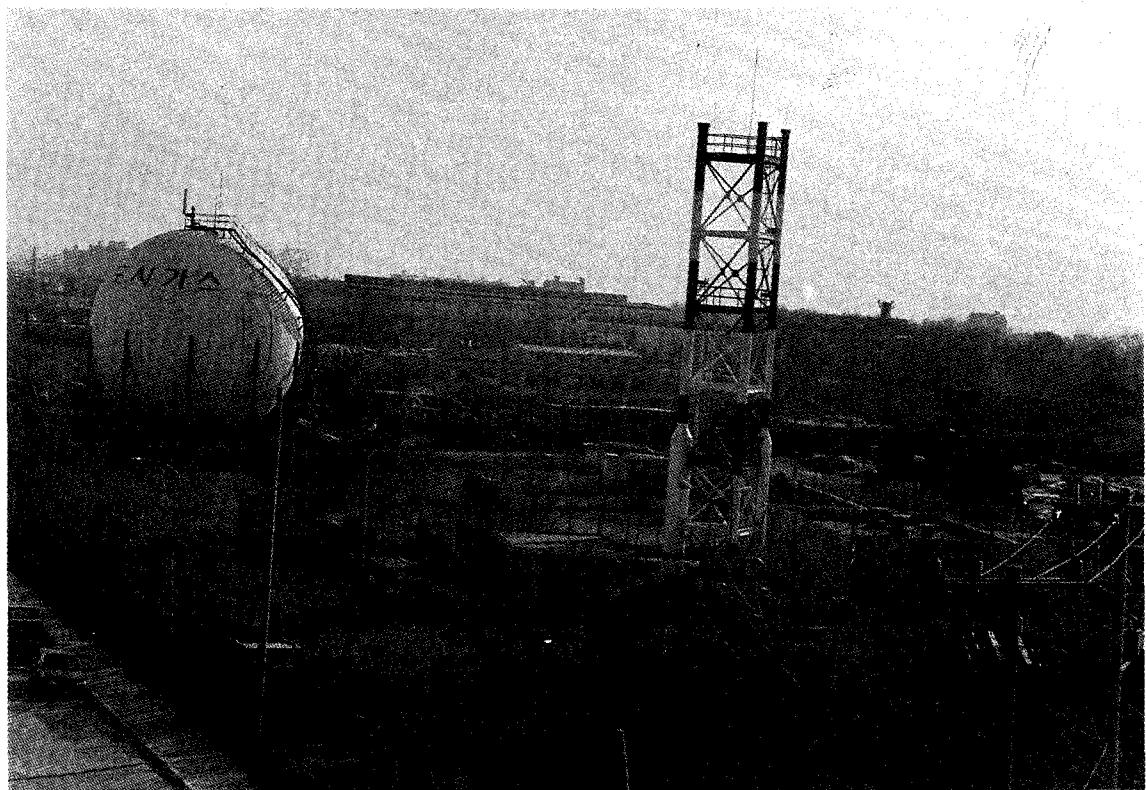


도시가스사업법증 개정법률



지난 1월 5일 도시가스사업법 전문이 1983년 전문이 개정된 이후 12년만에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가 국민연료로 성장한 것에 걸맞게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수요자 권익보호 및 정부의 장기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변화한 도시가스 부분의 여건을 반영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는 한편 행정규제완화라는 조류에 발맞춘 미래지향적인 법개정이었다는 데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 행	개 정
<p>제3조(사업의 허가) ① 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신 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가스사업의 개시가 일반의 수요에 적합할 것 2. (생략) <p><신 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④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조(사업의 허가)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 및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규모가 될 수 있을 것 2. (현행과 같음)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5.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의 범위안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도시가스공급권역을 설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제5조(사업의 개시의무등)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가스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구역·지점·주요공정별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기간을 정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자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6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그 사업을</p>
	<p>제5조(사업의 개시의무등) ① 그 허가를 한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p> <p>.....</p> <p>②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도시가스사업자</p> <p>.....</p> <p>③</p> <p>.....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p> <p>....</p> <p>제6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p> <p>.....</p>

현 행	개 정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②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7조(사업의 승계등)	제7조(사업의 승계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제8조(사업의 휴지·폐지 등)	제8조(사업의 휴지·폐지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② 도시가스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③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의 이해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허가 또는 제2항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제9조(허가의 취소등)	제9조(서가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1.~5. (생략)	2.~6. (현행 제1호 내지 제5호와 같음)
제10조(과징금처분) <신설>	제10조(과징금) ①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제9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시·도지사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과징금은 부과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천 행	개 정
<p>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신 설></p>	<p>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 관리) ①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가스사용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자격과 공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시공자는 이 법 및 다른법령에 적합하게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시공·관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를 1인이상 그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p> <p>④ 시공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⑤ (생략)</p>	<p>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 관리) ①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기술인력·시설·장비 또는 자격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범위는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시공자는 이 법 및 다른법령에 적합하게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시공·관리하여야 한다.</p> <p>④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관 설치계획 및 배관공급능력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당해 시공자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⑤ 시공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시공관리자를 그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p> <p>⑥ 시공자는 그 도급받은 공사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시공자가 아닌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⑦ (현행 제5항과 같음)</p>

천 행	개 정
<p><신설></p>	<p>제12조의2(시공자의 등록등)</p> <p>① 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4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5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4호에 규정된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법인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등록을 한 경우로서 동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상실될 때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시설·장치 또는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될 때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을 하도록 할 때 4.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 5.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6.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 다만, 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p>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자가 제3항제2호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현 행	개 정
<신 설>	<p>제12조의3(표준공사비)</p> <p>①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스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p> <p>② 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표준 공사비를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p>
<신 설>	<p>제12조의4(시정명령등)</p> <p>시·도지사는 시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시공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시공관리자가 그 공사현장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고의·과실로 인하여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3.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한 표준공사비보다 공사비를 과다하게 받는 때 4. 기타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여 적정한 시공·관리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제13조(시공의 자체검사)	<p>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p> <p>도시가스사업자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5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공정별로 시·도지사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하거나, 가스 사용자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시·도지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p> <p><신 설></p> <p>③ (생략)</p>
	<p>제13조(시공의 자체검사)</p> <p>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14조(시공기록등의 보존)</p> <p>.....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15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②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는 당해 공사를 한 시공자가 이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현 행	개 정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합격) 시·도지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임시합격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공급시설의 임시합격) ①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가스수급상 필요 한 경우에는
② (생략)	② (생략)
제17조(정기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정기검사) ①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면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이후 3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가스의 공급계획)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②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가스공급계획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신설>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① 시·도지사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를 포함한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당해 연도를 포함한 10년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u><신 설></u>	<p>제18조의3(가스공급등 공사계획)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당해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도시가스공급관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역별 도시가스공급관공사계획에 따라 공급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u><신 설></u>	<p>제18조의4(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등) ① 도시가스사업에 필요한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p>
제19조(공급의무)	<p>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지역안에 있는 가스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받은 공급지역외의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p>
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	<p>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p> <p>4.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p> <p>제19조(공급의무)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p> <p>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정하여 질 것</p> <p>4. 특정사업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p>

현 행	개 정
<p><신 설></p> <p>③제18조제3항의 규정은 공급규정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가스공급계획」을 「공급규정」으로 본다.</p>	<p>③통상산업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가스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공급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 내용의 변경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④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제21조(공급규정등의 준수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p> <p>제23조(특정공급계약)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간에 가스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사업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없을 것 2. 가스의 공급을 받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적합할 것. <p>제24조(공급조건) ①가스도매사업자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공급조건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조건에 비하여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21조(공급규정등의 준수의무) 도시가스사업자 …</p> <p>.....</p> <p>공급규정</p> <p>...</p> <p>제23조(특정공급계약) ①가스도매사업자간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p> <p>②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가스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자 ... <p>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일시적인 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법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량의 한도 2. 사용용도 3. 사용제한 기간 <p>②통상산업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필요한 법위안에서 가스공급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제29조(안전관리자) 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 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 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 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채 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u> 의 규 정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리자를 이 법에 의하여 채 용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자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해 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 장 할 수 있다. ③~⑤ (생략)	제29조(안전관리자) ① <u>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u> ② <u>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 <u>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 ③~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안전교육) ①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채용하고 있는 안전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u>시·도지사</u> 가 실시하는 안전교 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0조(안전교육) ① <u>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용에 쓰이게 하기 위하여 도로·교량·하수구·溝渠 ·하천·제방·기타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배 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용 토지 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1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u>가스</u> <u>공급시설</u>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타인의 토지의 지하사용)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타인의 토지의 지하에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의 서유자 및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② (생략)	제33조(타인의 토지의 지하사용) ① <u>배관 및 정압기를</u>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재정신청) 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손실을 받은 자간에 협의 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에 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은 소원법에 의한 소원 의 재결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제39조(조정신청) ① <u>조정</u> <삭 제>

현 행	개 정
<p>재정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제40조(조정명령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을 지도·감독하며, 가스의 수급의 원활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지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p> <p><신설></p>	<p>제40조(조정명령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p>
<p>제41조(보고)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40조의2(회계처리)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회계처리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가스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제42조(검사)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의 사무소 기타 영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41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 </p>
<p>제43조(보험가입)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신설></p>	<p>제42조(검사) ①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3조(보험가입)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그가 공급 또는 사용하는.....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3조의2(연구·개발투자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도시가스의 제조·이용등에 관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게 하거나 도시가스의 제조·이용등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하거나 출연하도록 권고함에 있어서는 도시가스의 제조·이용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p><u><신설></u></p> <p>제45조(권한의 위탁)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6조(벌칙) ①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의 승락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을 방해하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④ 도시가스사업자의 승락없이 가스공급시설을 변경한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생략)</p> <p>제49조(벌칙)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 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다.</p> <p><u><신설></u></p> <p>제51조의(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3조의3(청문)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 사업의 정지·제한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고자 하거나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5조의2(권한의 위탁) ①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제48조(벌칙) 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② 1천만원..... ③ (현행과 같음) ④500만원..... ⑤ (현행과 같음)</p> <p>제49조(벌칙)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 3천만원..... 제50조(벌칙)2천만원.....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¹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가스사용자</p> <p>제51조의(벌칙)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현 행	개 정
<p>1. 제6조제1항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아니한 자 4. 제25조·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7조제2항·제3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p>	<p>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양도·양수를 하거나 합병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휴지·폐지를 한 자 3.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관리를 한 자 4.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동항에 규정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관리를 한 자 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8.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승인을 얻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10.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가스공급계약을 한 자 11.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1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도시가스 사업자 13.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2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1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동항에 규정된 위해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2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위해예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7.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8.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p>

제52조(벌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변경명령에 위반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법령개정

천 행	개 정
<u>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u>	2.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8조의 제3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관공사계획에 따라 공급관공사계획에 따라 공급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신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자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4조(과태료) ① <u>500만원</u>
1. 제5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1조·제26조제1항·제3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 <u>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u>
2. 제5조제2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u>제5조제2항</u> <u>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신 설>	3. <u>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u>
<신 설>	4. <u>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u>300만원</u>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u>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u>
<신 설>	5. <u>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③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삭 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 한다.	④ <u>및 제2항</u> <u>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u>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상 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⑥ <u>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 <u>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 <u>과태료의 재판을 한다.</u>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